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995. 12.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5년 12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35회 의회(정기회) 제1차 위원회
(95.12.13.) 상정, 질의토론
제35회 의회(정기회) 제2차 위원회
(95.12.14.) 상정, 질의토론
제35회 의회(정기회) 제3차 위원회
(95.12.15.) 상정, 질의토론
제35회 의회(정기회) 제4차 위원회
(95.12.16.) 상정, 질의토론
제35회 의회(정기회) 제5차 위원회
(95.12.18.) 상정, 질의토론
제35회 의회(정기회) 제6차 위원회
(95.12.19.) 상정, 질의토론
제35회 의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
(95.12.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양석통

가. 제출이유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승인받고 자함.

나. 주요골자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건재)

○ “내무행정” 항 시설비에 구민회관 건립비로 4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은 94년도에 토지매입 및 연구개발비로 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실시 설계비 등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불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구민회관 건립은 마포구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임. 집행기관에서는 우리구의 지역 및 환경적인 특수한 여건을 재삼 인식하고, 구민의 지역문화 창달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동시설 건립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

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관리” 항에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비용으로 34억 723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96년도부터 시행되는 2단계 매립지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될 4,371억원을 96년도 부담분에 대하여 각 자치구별로 배분한 금액임. 동부담금은 폐기물 배출량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 때문에 목동 소작장이 있는 양천구의 경우 가장 적은 22억원을 부담하고 송파구의 경우는 89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되고 있음.

동부담금은 지난 12월 4일 구의회 의장단 모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의약관리” 세항에서 의료보호와 의료보험 등 치료용 약품 구입비로 7,550만원이 계상됨. 95년 11월말 현재 투약일수를 기준으로 한 보건소 환자의 연인원은 14만 2,000명으로 94년 대비 5만 1천명이 늘어 55%가 증가한 반면, 약품구입에 따른 예산증가율은 32%에 머물러 95.12.11. 현재 혈압약제인 암로디핀, 아테스울 등 일부 품목은 품절되어 타 보건소에서 공차해야 하는 실정에 있음. 96년 내과 약품구입비 예산은 95년도 예산 대비 432만 5천원이 증액되어 약 6% 증가에 그쳐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약품공급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현재 주민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저소득층 방문진료 사업과 노인정 이동 순회 진료사업등 보건 특화사업이 육성 발전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동약품구입비에 대하여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교통행정관리” 항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전문직운영에 따른 지도구입과 전산용품 및 자료 인쇄비로 3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지도구입등 교통전문직 운영에 따른 예산과 중복되어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관리” 항에서 공익 근무요원 104명의 봉급과 활동비로 1억 8,591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에서 회계의 세출은 불법 주차장 단속에 따른 비용등 규정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할 버스전용 차선 단속 공익 근무 요원 46명분의 봉급과 활동비가 일괄 계상되어 있음.

버스 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는 일반회계 “기획관리” 항에 62명분 1억 540만원이 기히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산출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문화재 탐방 교실운영이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며 계상된 예산의 증액 혹은 삭감에 대한 의견을 피력 바람.

○ 답변요지(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건설사업처럼 측정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업효과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질의요지(심재창 위원): 마포구민 국악한마당 예산이 5배만원 편성되었는데 적정한지 아니면 부족하여 증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설명 바람.

○ 답변요지(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금년도 마포구민 국악한마당은 지난 12월 11일 서강대학교 강당에서 개최하였는데 경비는 1천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사 수준으로 치를 수 있도록 증액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질의요지(김종열 위원): 본인이 소속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내역서를 참고하여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견해를 설명하기 바람.

○ 답변요지(문화공보실장 조병하): 홍보용 슬라이드 제작비 1천만원으로는 우리마포를 홍보하는 슬라이드 제작비용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3천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여 주시면 훌륭히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장): 마포문화원 설립 추진에 대하여 설명 바람.

○ 답변요지(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마포문화원 설립은 지방문화원육성법에 의거 문화체육부에서 인가도록 되어 있으며 관내 거주하는 주민들중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특수법인으로 설립합니다. 본 추진비는 내년도에 민간인들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기 위하여 간담회 개최등 회의비적 성격으로 편성함.

○ 질의요지(심재창 위원): 구청사 증축비와 건물안전 진단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 바람.

○ 답변요지(총무과장 이춘기): 기술적인 문제로 건축부서에 의뢰하여 통보된 사항으로 건축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질의요지(배상대 위원): 방범초소 운영 지원비 31,320천원에 대한 지원내역을 설명하여 주기 바람.

○ 답변요지(총무과장 이춘기): 방범대원 지원예산은 29개 과출소에 지원하는 예산임.

○ 질의요지(배상대 위원): 방범초소 운영 지원비 31,320천원에 대한 지원내역을 설명하여 주기 바람.

○ 답변요지(총무과장 이춘기): 방범대원 지원예산은 29개 과출소에 지원하는 예산임.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장): 총무재무위원회 예비심사 내역서를 보면 동사무소 식당 운영 보조비가 50만원으로 일괄 증액되었는데 동정원을 기준으로 20명이상과 이하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설명바람.

○ 답변요지(총무과장 이춘기): 식당운영 보조금은 대부분 식당운영에 따른 고용인건비(월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질의요지(채재선 간사): 105페이지 재정 계획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비 2천만원은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계획을 설명바람.

○ 답변요지(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시의 교

부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며 올해도 지난번 47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업무 처리에 사용되며 예산계의 예산운용 직원 식사비 및 자체 세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 질의요지(유동균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및 시책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설명 바람.

○ 답변요지(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시책업무 추진비는 각종 특수업무 추진에 따른 신용카드 결재를 통한 식대지출 비용등이며 시책추진활동비는 자가진단모형측정에 따른 자문비, 기획계 직원에 대한 격려비, 업무계획 심사분석 보고회, 세 계화업무추진, 구정보고회 준비등으로 시지침에 의거 카드와 현금 결재를 50대 5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미래화 연구팀 국외 연수비 구성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간 추진실적에 대하여?

○ 답변요지(생활체육과장 김종열): 8개 분야 7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원은 각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큰 관심을 가진 직원이며 연구실적은 아직까지 없음.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연구실적도 없으며 96년도에 바로 해외부터 시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질의요지(유동균 위원): 해외 연수비가 총무과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연수 및 업무출장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지?

○ 답변요지(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미래화연구팀이 견문을 넓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며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 질의요지(박동칠 위원): 민방위 예산중 의무자 여비에 대하여 설명 바람.

○ 답변요지(민방위과장 박재용): 현역 입영 대상자 3,500명에게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입영장소 거리(km)에 따라 다름.

○ 질의요지(김세창 위원): 전자복사용지 비용 편성에 대하여 설명 바람.

○ 답변요지(재무과장 최영명): 각실과에서 소요되는 기본적인 복사지를 재무과에 일괄해서 편성하였으며 실과별 특수업무 추진에 따른 복사지는 별도로 집행부서에 편성하였습니다.

○ 질의요지(유동균 위원): 구유 잡종재산 유지관리비는 어떤 목적으로 편성하였는지?

○ 답변요지(재무과장 최영명):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토목과 예산으로 사용하다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물, 나대지 임대부분의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체납등 세무업무에 노고가 큰 등장에 대하여 세무활동비를 지금 할 용의는 있는지? 또 각동사무소에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등기우송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하였는지?

○ 답변요지(부과과장 이영목): 등장은 예산 편성 지침에 92년부터 미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포상금지급시 반영토록 검토해보겠으며 정기분에 한하여 등직원이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는데 고지서를 등기우송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장): 18페이지 우리구 이자수입이 92년도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자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바람.

○ 답변요지(재무과장 최영명): 순세계 잉여율이 줄어들고 있어 다음년도 이월시 그 금액에 대한 이자가 줄어들며 시의 조정교부금이 분기말 교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자수입이 적어지고 있음.

○ 질의요지(김세창 위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가 1억 6천 편성되었는데 부족하지는 않는가? 1억 6천으로 가능한지?

○ 답변요지(사회계장 조남채): 작년에 편성된 18억도 모자랐으나 예산 형편상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음. 정부안도 점차 감편성하는 추세이나 취로사업비를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음.

○ 질의요지(김종열 위원): 재해대책 저소득

- 총 지원금 3천만원의 용도에 대하여?
- 답변요지(사회계장 조남채): 지금까지는 이웃돕기 기금을 모금하여 저소득층 재해에 대한 지원을 하여왔으나 최근 성금모금을 금합으로 인하여 지원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원방법이 없어 지원할 예상금액을 편성하였음.
- 질문요지(유웅봉 위원): 취로사업시 취로인부가 불의의 사고시 보험처리를 할 수 있게 보험가입은 하였는지, 그리고 동취로의 반장이란 제도로 횡포가 있는 데 이를 지도 감독한 적이 있는지, 점자도서관 안전 및 시설관리에 대하여 설명 바람.
- 답변요지(사회계장 조남채): 취로인부에 대한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반장 제도는 공식적 제도는 아니며 이에 문제가 있어 감사실 자적사항으로 못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앞으로는 순환해서 하도록 지도하겠음.
- 점자도서관은 노인정 일부를 빌려 사용하여 노후되었음, 노인정 수리비에서 집행토록 하겠음.
- 질문요지(채재선 간사): 명세서 166페이지 전물군경미망인 선진지 견학증 선진지는 어디이며, 견학목적은?
- 답변요지(박남규 가정복지계장): 선진지는 독립기념관과 엑스포이며, 견학목적은 위로차원임.
- 질문요지(김동희 위원): 명세서 171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를 시민보건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50%를 삭감하자고 했는데 애로는 없는가?
- 답변요지(박남규 가정복지계장): 계절에 맞는 행사를 하여 청소년을 선도할 목적이므로 시에서 50%인 600만원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600만원은 반영해 주어야 함.
- 질문요지(김세창 위원): 명세서 166페이지 구립경로당 시설 대수선비만 1억인데 그 비용으로 신축을 하면 안되는가?
- 답변요지(박남규 가정복지계장): 동사무소에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골조만 남기고 거의 다 수선을 해야하고, 골목이

- 좁아 차가 못 들어가는 관계로 1억이 소요되며, 주차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신축은 안됨.
- 질문요지(김종열 위원): 명세서 171페이지 청소년독서실은 이용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타 용도로 전환할 용의는 없나?
- 답변요지(박남규 가정복지계장): 내년에 청소년독서실을 다른 시설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겠음.
- 질문요지(유웅봉 위원): 명세서 175페이지 아현3동·대홍동 가정복지시설 건립 부지 매입비 한계가 10억인데 부지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2곳을 계상하였지만 우선순위 1곳만 선정하여 97년으로 이월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 답변요지(박남규 가정복지계장): 내년에 꼭 집행토록 하겠음.
- 질문요지(김유현 위원장): 명세서 164페이지 결식노인 급식비를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80명으로 증액요청이 있는 걸로 아는데 60명으로 한 이유는?
- 답변요지(박남규 가정복지계장): 70명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금년과 같이 60명으로 조정되었음. 국비가 약간 보조되므로 시에 시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하겠음.
- 질문요지(김세창 위원): 명세서 178페이지 식품점객모범업소에 격려품으로 온수기·건조기·자외선 소독기 등을 사준다고 했는데 이런 물품이 없는 업소는 없으므로 다시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 답변요지(고준기 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음.
- 질문요지(김유현 위원장): 명세서 180페이지 농수산물유통센타 설립 예정지를 사용허가만 받고 소유권 취득은 못하면서 몇십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투자가치가 있겠는가?
- 답변요지(윤병여 시민국장): 현재 쓰레기 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어서 취소가 되어야 양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사용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양여 절차를 밟기 위해

서 예산에 반영한 것임.

- 질문요지(배상대 위원) : 에이즈 양성자 관리비가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현황을 설명 바람.
- 답변요지(보건소장 김영호) : 에이즈 양성자는 우리구에 6명이었으나 최근 1명이 늘어 7명이 되었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 보건소로 통보가 오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전화 및 면담을 통하여 증세파악 등 관리를 하고 6개월에 1번씩 혈액채취 등 면역검사를 실시하는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질문요지(채재선 간사) :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어느정도 되며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바람.
- 답변요지(염세동 주택과장) : 금년도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379건으로 그중 224건은 정비하였으며 175건은 미정비 되었음. 미정비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서는 건축행위자 고발,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철거용역비는 단순철거가 어려운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 질문요지(김동희 위원) : 신발생 무허가 건물 신고 보상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와 같이 전액 삐감되어도 되겠는가?
- 답변요지(염세동 주택과장) :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무대책 철거를 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을 위하여 발생초기에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
- 질문요지(정만직 위원) : 실제적으로 주민이 신고한 건수가 있습니까?
- 답변요지(염세동 주택과장) : 없습니다.
- 질문요지(유동균 위원) : 239페이지 공고료 6,468천원은 어떠한 사항을 공고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설명바람.
- 답변요지(황정부 도시정비과장) : 공고료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신문광고 비용이며 도시계획위원회는 내부당연직 4명 외부위촉직 13명으로 모두 17명이고,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내부 4명 외부 5명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16가지 사항에 대한 심의와 시장권한의 입안에 대한 자문등을 하고 있음.

- 질문요지(김동희 위원) : 위원회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 답변요지(황정부 도시정비과장) :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음.
- 질문요지(김세창 위원) : '96예산안 의회 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람.
- 답변요지(손사익 도시정비국장) : 95년 미집행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함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마포로 주변 신시가지 조성계획 현상공모전 전시회 비용 1,439천원과 동사업 심사위원회 업무추진비 1,641천원 그리고 동사업 시상금인 보상금 18,000천원을 '96년 예산에 반영 요망.
- 질문요지(김종열 위원) : 239페이지 체비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매년 계상되어야 하는지 설명 바람.
- 답변요지(황정부 도시정비과장) : 구전체체비지는 146필지가 있으며 도로 공공용지가 대부분이며 65필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음. 감정평가 수수료 및 축량수수료는 체비지 유지관리 및 개인에게 체비지 매각을 위한 비용이며 이는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는 예산입니다.
- 질문요지(채재선 간사) : 체비지 순찰직원 급량비, 무단 점유물정비, 체비지 순찰직원 여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설명하여 주기 바람.
- 답변요지(황정부 도시정비과장) : 이는 체비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모두 시의 교부금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금년 서교동 4필지 체비지 무단점유를 적발하였음.
- 질문요지(정만직 위원) : 퍼복비 예산계정을 보면 시민봉사실, 위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지적과, 건축과의 정원과 대상직원, 금액이 서로 상이한데 예산편성의 기준과 금액에 대하여 설명바람.

- 답변요지(이은규 기획예산과장) : 피복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실제 민원부서 근무직원에 대하여 사전 실과간 협의를 거쳐 계상하였으며 위생과 직원근무복에 대하여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요지(김동휘 위원) : 전산용품비, 자료 인쇄비, 지도구입비가 특별회계 307페이지와 이중 계상되었는데 삭감하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겠는가?
- 답변요지(교통행정과장 유병식) : 교통전문직 운영비를 95년도 예산과 대조하다 잘못하여 이중 편성되었습니다.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질문요지(김종열 위원) : 주차장 시설관리 비중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71억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람.
- 답변요지(교통행정과장 유병식) : 96년도에는 2개소를 건설할 계획임. 성산동에는 현재 수용절차를 밟고 있어 부지 구입비를 포함 건설비가 28억 계상되었고, 상수동 부지 850평 43억이 예산에 책정되었음.
- 질문요지(이용원 위원) :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필름과 현상료 가격차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 답변요지(교통행정과장 유병식) :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시에도 거론된 내용으로 비디오 테이프, 필름 현상료등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조달청 가격정보지를 참고하여 예산을 반영한 바 구체적인 규격을 표시하지 않고 품명만 표시함으로 인하여 상이하게 된 바 죄송스럽게 생각함.(90분짜리와 120분짜리 비디오테이프, 20컷트와 36컷트 필름등)
- 질문요지(유동균 위원) : 토목과예산을 보면 필름구입비만 있고 인화료는 책정되지 않은 바 어떻게 된 이유인지 설명 바람.
- 답변요지(토목계장 안병진) : 현업부서이므로 현장을 나가 사진을 찍기만하고 인화는 필요시 현장감독이 지출하고 있음.
- 질문요지(채재선 간사) : 제설대책 추진비 3백만원의 용도는?
- 답변요지(도로관리계장 장명식) : 제설대책 요원에 대한 급식비로 책정하였음.
- 질문요지(채재선 간사) : 사고주에 대한 설명과 금년 사고 전수에 대하여 설명 바람.
- 답변요지(도로관리계장 장명식) :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등의 사고 발생시 수리예산이며 30건의 사고를 기준으로 50%미만 계상하였음. 올해는 7건 사고발생에 6백만원이 지출되었음.
- 질문요지(정만직 위원) : 279페이지 예비 V.C.B가 무엇입니까?
- 답변요지(하수과장 조병현) : 한전에서 들어오는 고압전기의 수배전판의 고압스위치입니다.
- 질문요지(정만직 위원) : 빗물펌프장 관리 9천만원의 소요내용과 펌프장직원 지도 관리에 대하여?
- 답변요지(하수과장 조병현) : 각 펌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공사 4천 5백만원과 기계시설 4천 5백만원으로 구분 편성하였음. 근무점검을 수시로 하여 불의의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요지(정만직 위원) : 282페이지 일반 수용비중 쓰레기봉투 구매비가 청소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책정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하기 바람.
- 답변요지(공원녹지과장 윤종덕) : 청소과와 협의한 결과 봉투를 구매하여 집행토록 지침이 되어 있어 별도로 편성하였음.
- 질문요지(정만직 위원) : 잣나무 구입비와 내년도 식목장소에 대하여 답변바람.
- 답변요지(공원녹지과장 윤종덕) : 내년도 식목행사시 식재할 나무 구입예산이며 장소는 창전동 와우공원에 심을 예정입니다.
- 질문요지(김세창 위원) : 예산안 명세서 38페이지 모터펌프가 보일러에 붙어 있는 것인데 모터펌프 관리 보수비와 보일러 세관 및 보수비는 중복된 것이 아닌가?
- 답변요지(의안계장 이의택) : 한꺼번에 세관할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필요한 것만 하므로 중복된 것이 아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기타사항 : 없음

**1996年度 (一般會計·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예 산 총 칙

제1조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1. 일반회계	95,632,225	2,868,966
2.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668,891	없 음
3. 새마을소득지 원사업특별회계	220,000	없 음
4. 주차장특별회계	9,398,116	없 음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6년도 채무 부담 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199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0백 만원으로 한다.

제5조 19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1996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는 880,000천원으로 한다.

2. 岁入歲出豫算總括

세입·세출예산총괄표

(一般會計)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	'95예산액	%	증 감
합 계	95,632,225	100	77,296,828	100	18,335,397
지 방 세	25,490,507	26.7	23,105,662	29.9	2,384,845
세 외 수 입	24,937,024	26.1	21,294,694	27.5	3,678,330
경상적세외수입	10,451,966	10.9	9,967,673	12.9	484,293
임시적세외수입	14,521,058	15.2	11,327,021	14.7	3,194,037
지방교부세	0		0		0
조정교부금	40,173,000	42.0	30,104,000	38.9	10,069,000
보조금	4,995,694	5.2	2,792,472	3.6	2,203,222
국고보조금	1,931,705	2.0	1,594,412	2.1	335,293
시비보조금	3,063,989	3.2	1,196,060	1.5	1,867,929
지방채	0		0		0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	'95예산액	%	증 감
합 계	95,632,225	100	77,296,828	100	18,335,397
인건비	32,407,087	33.9	30,598,445	39.6	1,808,642
물건비	20,603,219	21.5	17,916,035	23.2	2,687,184
이전경비	16,978,644	17.6	12,539,444	16.2	4,439,200
자본지출	24,559,275	25.7	14,164,094	18.3	10,395,181
용자및출자	204,000	0.2	608,000	0.8	△404,000
보전재원	0		0		0
내부거래	0		0		0
기타	0		0		0
예비비및기타	880,000	0.9	1,470,810	1.9	△590,810

一 般 會 計
'96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본예산] ○세입(장, 관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	구성비	증 △ 감
합	95,632,225	100.0	77,296,828	100.0	18,335,397
세 입	지방세수입	25,490,507	26.7	23,105,662	29.9
	세외수입	24,973,024	26.1	21,294,694	27.5
	경상적세외수입	10,451,966	10.9	9,967,673	12.9
	임시적세외수입	14,521,058	15.2	11,327,021	14.7
	지방교부세	0		0	0
	지방교부세	0		0	0
	지방양여금	0		0	0
	지방양여금	0		0	0
	조정교부금	40,173,000	42.0	30,104,000	38.9
	조정교부금	40,173,000	42.0	30,104,000	38.9
자 본	보조금	4,995,694	5.2	2,792,472	3.6
	국고보조금	1,931,705	2.0	1,596,412	2.1
	시·도비보조금	3,063,989	3.2	1,196,060	1.5
	지방채	0		0	0
	국내차입금	0		0	0
	국외차입금	0		0	0
	유자금수입	0		0	0

[본예산] 기능별		'96일반회계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합	계	95,632,225	(0)	77,296,828 11,335,397
100	지방세수입	25,490,507	(0)	23,105,662 2,384,845
110	지방세	25,490,507	(0)	23,105,662 2,384,845
111	보통세	22,361,537	(0)	20,520,081 1,841,456
112	독점세	2,707,950	(0)	2,267,812 440,138
113	과년도수입	421,020	(0)	317,769 103,251
200	세외수입	24,973,024	(0)	21,294,694 3,678,330
210	경상적세외수입	10,451,966	(0)	9,967,673 484,293
211	재산임대수입	24,430	(0)	14,112 10,318
212	사용료수입	1,614,851	(0)	1,841,604 △226,753
213	수수료수입	4,620,199	(0)	4,274,204 345,995
215	징수교부금수입	3,822,486	(0)	3,368,203 454,283
216	이자수입	370,000	(0)	469,550 △99,550
220	임시적세외수입	14,521,058	(0)	11,327,021 3,194,037
221	재산매각수입	796,000	(0)	1,439,380 △643,380
222	이월금	11,200,000	(0)	8,419,084 2,780,916
226	부담금	1,205,058	(0)	0 1,205,058
227	잡수입	1,248,000	(0)	1,339,557 △91,557
228	과년도수입	72,000	(0)	129,000 △57,000
500	조정교부금	40,173,000	(0)	30,104,000 10,069,000
510	조정교부금	40,173,000	(0)	30,104,000 10,069,000
511	조정교부금	40,173,000	(0)	30,104,000 10,069,000
600	보조금	4,995,694	(0)	2,792,472 2,203,222
610	국고보조금	1,931,705	(0)	1,596,412 335,293
611	국고보조금	1,931,705	(0)	1,596,412 335,293
620	시·도비보조금	3,063,989	(0)	1,196,060 1,867,929
621	시·도비보조금	3,063,989	(0)	1,196,060 1,867,929

□ 세 출

[본예산] ○ 세 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	구성비	증△감
합	95,632,225	100.0	77,296,828	100.0	18,335,397
세	경상예산	66,659,864	69.7	58,622,552	75.8
	인전비	32,407,087	33.9	30,598,445	39.6
	기준경비	11,467,441	12.0	9,049,202	11.7
	관서운영비	1,569,643	1.6	1,574,470	2.0
	경상직경비	21,215,693	22.2	17,400,435	22.5
	사업예산	28,092,361	29.4	17,203,466	22.3
	국고보조(경상)	4,110,290	4.3	3,290,320	4.3
	국고보조(사업)	550,000	0.6	0	550,000
	지방양여금사업	0		0	0
	시·도비보조사업	516,110	0.5	70,200	0.1
출	자체(신규)사업	22,915,961	24.0	13,842,946	17.9
	자체(계속)사업	0		0	0
	채무상환	0		0	0
	지방채(국내)상환	0		0	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	0
	기타(국내)상환	0		0	0
	차관(해외)상환	0		0	0
	예비비등	880,000	0.9	1,470,810	1.9
	예비비	880,000	0.9	1,287,770	1.7
	기타	0		183,040	0.2
△590,810					
△407,770					
△183,040					

'96 일반회계 세출예산

[본예산] 기능별-본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합	계	95,632,225	77,296,828	18,335,397
1000	일반행정	48,675,264	41,012,468	7,662,796
1100	입법및선거관계	1,364,911	2,500,416	△1,135,505
1120	지방의회운영	1,364,911	1,333,099	31,812
1121	의사운영	927,761	911,659	16,102
1121-100	경상예산	927,761	911,659	16,102
1121-110	인건비	444,705	419,121	25,584
1121-120	기준경비	216,507	165,480	51,027
1121-130	관서운영비	25,579	24,794	785
1121-140	경상직경비	240,970	302,264	△61,294
1122	의정활동	437,150	421,440	15,710
1122-100	경상예산	437,150	421,440	15,710
1122-120	기준경비	437,150	421,440	15,710
1200	일반행정비	47,310,353	38,512,052	8,798,301
1210	기획관리	21,479,382	16,948,197	4,531,185
1211	기획관리	58,680	70,124	△11,444
1211-100	경상예산	58,680	70,124	△11,444
1211-120	기준경비	12,520	12,520	
1211-140	경상직경비	46,160	57,604	△11,444
1213	예산운영	20,834,291	16,342,715	4,491,576
1213-100	경상예산	20,134,291	16,342,715	3,791,576
1213-110	인건비	12,905,083	11,309,301	1,595,782
1213-120	기준경비	4,921,778	3,355,019	1,566,759
1213-130	관서운영비	32,292	27,069	5,223
1213-140	경상직경비	2,275,138	1,651,326	623,812
1213-200	사업예산	700,000		700,000
1213-250	자체(신규)사업	700,000		700,000
1216	법무관리	125,429	140,634	△15,205
1216-100	경상예산	125,429	140,634	△15,205
1216-120	기준경비	8,100	8,640	△540
1216-130	관서운영비	29,994	40,966	△10,972
1216-140	경상직경비	87,335	91,028	△3,693
1218	통계전산운영	460,982	394,724	66,258
1218-100	경상예산	460,982	394,724	66,258
1218-120	기준경비	4,920	3,720	1,200
1218-140	경상직경비	456,062	391,004	65,058
1220	공보관리	498,352	477,938	20,414
1221	공보관리	498,352	477,938	20,414
1221-100	경상예산	496,352	467,938	28,414
1221-120	기준경비	130,310	131,550	△1,240
1221-130	관서운영비	12,206	10,072	2,134
1221-140	경상직경비	353,836	326,316	27,520

'96 일반회계 세출예산

[본예산] 기능별－본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1221-200 사업예산	2,000	10,000	△8,000
1221-250 자체(신규)사업	2,000	10,000	△8,000
1230 행정관리	84,692	73,145	11,547
1231 감사관리	84,692	73,145	11,547
1231-100 경상예산	84,692	73,145	11,547
1231-120 기준경비	27,160	40,924	△13,764
1231-130 관서운영비	11,235	9,090	2,145
1231-140 경상직경비	46,297	23,131	23,166
1240 내무행정	24,556,884	20,336,809	4,220,075
1241 서무관리	8,368,128	6,361,191	2,006,937
1241-100 경상예산	3,503,058	4,336,713	△833,655
1241-110 인건비	1,513,774	2,243,557	△729,783
1241-120 기준경비	854,917	973,320	△118,403
1241-130 관서운영비	295,828	315,197	△19,369
1241-140 경상직경비	838,539	804,639	33,900
1241-200 사업예산	4,865,070	2,024,478	2,840,592
1241-250 자체(신규)사업	4,865,070	2,024,478	2,840,592
1242 인사관리	270,571	187,491	83,080
1242-100 경상예산	270,571	187,491	83,080
1242-120 기준경비	95,788	82,138	13,650
1242-130 관서운영비	2,080	1,720	360
1242-140 경상직경비	172,703	103,633	69,070
1243 사회진흥	602,780	721,808	△119,028
1243-100 경상예산	555,670	684,905	△129,235
1243-120 기준경비	148,500	137,120	11,380
1243-140 경상직경비	407,170	547,785	△140,615
1243-200 사업예산	47,110	36,903	10,207
1243-210 국고보조(경상)	8,460	15,228	△6,768
1243-250 자체(신규)사업	38,650	21,675	16,975
1244 민원실운영	293,610	294,442	△832
1244-100 경상예산	293,610	286,242	7,368
1244-120 기준경비	20,160	16,440	3,720
1244-130 관서운영비	110,493	105,627	4,866
1244-140 경상직경비	162,957	164,175	△1,218
1245 일선행정조직운영	15,021,795	12,771,877	2,249,918
1245-100 경상예산	13,984,355	12,547,624	1,436,731
1245-110 인건비	7,019,900	6,617,967	401,933
1245-120 기준경비	3,351,213	2,641,521	709,692
1245-130 관서운영비	542,855	542,130	725
1245-140 경상직경비	3,070,387	2,746,006	324,381
1245-200 사업예산	1,037,440	224,252	813,188
1245-250 자체(신규)사업	1,037,440	224,252	813,188

'96 일반회계 세출예산

[본예산] 기능별－본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1250 재무행정	691,043	675,963	15,080
1251 세정관리	448,951	381,693	67,258
1251-100 경상예산	448,951	381,693	67,258
1251-120 기준경비	169,016	172,216	△3,200
1251-140 경상직경비	279,935	209,477	70,458
1252 회계관리	242,092	294,270	△52,178
1252-100 경상예산	242,092	284,849	△42,757
1252-120 기준경비	24,200	38,160	△13,960
1252-130 관서운영비	71,377	61,666	9,711
1252-140 경상직경비	146,515	185,023	△38,508
2000 사회개발	32,523,983	26,853,963	5,670,000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	20,086,757	15,894,532	4,192,225
2210 보건	2,547,848	2,240,822	307,026
2211 보건관리	2,314,633	2,028,493	286,140
2211-100 경상예산	2,273,682	2,012,520	261,162
2211-110 인건비	1,323,978	1,233,319	90,659
2211-120 기준경비	498,563	349,003	149,560
2211-130 관서운영비	65,428	64,572	856
2211-140 경상직경비	385,713	365,626	20,087
2211-200 사업예산	40,951	15,929	25,022
2211-210 국고보조(경상)	22,451	5,929	16,522
2211-250 자체(신규)사업	18,500	10,000	8,500
2212 위생관리	67,207	55,101	12,106
2212-100 경상예산	67,207	55,101	12,106
2212-120 기준경비	20,120	22,800	△2,680
2212-140 경상직경비	47,087	32,301	14,786
2213 의약관리	166,008	157,228	8,780
2213-100 경상예산	164,208	157,228	6,980
2213-140 경상직경비	164,208	157,228	6,980
2213-200 사업예산	1,800		1,800
2213-250 자체(신규)사업	1,800		1,800
2220 환경관리	16,366,815	12,465,726	3,901,089
2221 환경관리	85,339	75,466	9,873
2221-100 경상예산	85,339	75,466	9,873
2221-120 기준경비	11,080	9,450	1,630
2221-140 경상직경비	74,259	66,016	8,243
2222 청소관리	16,281,476	12,390,260	3,891,216
2222-100 경상예산	16,251,476	12,335,123	3,916,353
2222-110 인건비	8,107,854	7,759,817	348,037
2222-120 기준경비	144,412	144,303	109
2222-140 경상직경비	7,999,210	4,431,003	3,568,207
2222-200 사업예산	30,000	55,137	△25,137

'96 일반회계 세출예산

[본예산] 기능별－본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2222-250 자체(신규)사업	30,000	55,137	△25,137
2230 공원·녹지관리	1,172,094	1,187,984	△15,890
2231 도시공원관리	409,945	376,715	33,230
2231-100 경상예산	258,745	247,691	11,054
2231-110 인천비	169,860	168,625	1,235
2231-120 기준경비	5,520	4,320	1,200
2231-140 경상적경비	83,365	74,746	8,619
2231-200 사업예산	151,200	129,024	22,176
2231-250 자체(신규)사업	151,200	129,024	22,176
2232 녹지관리	762,149	811,269	△49,120
2232-100 경상예산	427,879	423,374	4,505
2232-110 인천비	226,480	224,834	1,646
2232-120 기준경비	2,000	3,060	△1,060
2232-140 경상적경비	199,399	195,480	3,919
2232-240 사업예산	334,270	387,895	△53,625
2232-240 시·도비보조사업	25,418	25,000	418
2232-250 자체(신규)사업	308,852	362,895	△54,043
2300 사회보장	9,476,182	8,466,741	1,009,441
2310 일반사회복지	426,663	289,768	136,895
2311 사회복지	426,663	289,768	136,895
2311-100 경상예산	426,663	289,768	136,895
2311-120 기준경비	60,800	23,160	37,640
2311-130 관서운영비	114,338	120,202	△5,864
2311-140 경상적경비	251,525	146,406	105,119
2320 생활보호	2,456,312	2,509,543	△53,231
2321 저소득주민보호	2,456,312	2,509,543	△53,231
2321-100 경상예산	19,195	70,904	△51,709
2321-140 경상적경비	19,195	70,904	△51,709
2321-200 사업예산	2,437,117	2,432,346	4,771
2321-210 국고보조(경상)	829,237	624,106	205,131
2321-250 자체(신규)사업	1,607,880	1,808,240	△200,360
2330 가정복지	6,593,207	5,667,340	925,777
2331 가정복지	1,236,581	962,172	274,409
2331-100 경상예산	746,719	653,583	93,136
2331-120 기준경비	19,840	22,600	△2,760
2331-140 경상적경비	726,879	630,983	95,896
2331-200 사업예산	489,862	306,503	183,359
2331-210 국고보조(경상)	359,862	284,012	75,850
2331-250 자체(신규)사업	130,000	22,491	107,509
2332 부녀복지	28,470	39,430	△10,960
2332-100 경상예산	28,470	39,430	△10,960
2332-120 기준경비	10,185	10,918	△733

'96 일반회계 세출예산

[본예산] 기능별-분청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 산 액	증 △ 감
2332-140 경상적경비	18,285	28,512	△10,227
2333 청소년복지	224,731	258,432	△33,701
2333-100 경상예산	176,411	197,962	△21,551
2333-120 기준경비	21,550	21,280	270
2333-140 경상적경비	154,861	176,682	△21,821
2333-200 사업예산	48,320	59,719	△11,399
2333-240 시·도비보조사업	45,200	45,200	
2333-250 자체(신규)사업	3,120	14,519	△11,399
2334 유아복지	5,103,425	4,407,396	696,029
2334-100 경상예산	177,178	177,055	663
2334-140 경상적경비	177,718	171,055	6,663
2334-200 사업예산	4,925,707	4,091,857	833,850
2334-210 국고보조(경상)	2,801,750	2,359,045	442,705
2334-220 국고보조(사업)	550,000		550,000
2334-240 시·도비보조사업	445,492		445,492
2334-250 자체(신규)사업	1,128,465	1,732,812	△604,347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	2,961,044	2,492,690	468,354
2410 주택사업	391,139	348,826	42,313
2411 주택기획	331,949	291,467	40,482
2411-100 경상예산	310,484	255,694	54,790
2411-120 기준경비	51,932	29,172	22,760
2411-130 관서운영비	129,640	135,599	△5,959
2411-140 경상적경비	128,912	90,923	37,989
2411-200 사업예산	21,465	35,773	△14,308
2411-250 자체(신규)사업	21,465	35,773	△14,308
2412 건축지도	59,190	57,359	1,831
2412-100 경상예산	59,190	57,359	1,831
2412-120 기준경비	12,120	26,520	△14,400
2412-140 경상적경비	47,070	30,839	16,231
2420 도시개발	2,569,905	2,143,864	426,041
2423 도시정비	63,637	92,850	△29,213
2423-100 경상예산	63,637	92,850	△29,213
2423-120 기준경비	9,840	17,840	△8,000
2423-140 경상적경비	53,797	75,010	△21,213
2424 하수처리	2,368,868	1,922,955	445,913
2424-100 경상예산	572,191	524,015	48,176
2424-110 인전비	408,221	377,755	30,466
2424-120 기준경비	19,200	16,200	3,000
2424-140 경상적경비	144,770	130,060	14,710
2424-200 사업예산	1,796,677	1,398,940	397,737
2424-250 자체(신규)사업	1,796,677	1,398,940	397,737
2425 지적관리	137,400	128,059	9,341

'96 일반회계 세출예산

[본예산] 기능별－본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 산 액	증 △ 감
2425-100	경상예산	137,400	128,059	9,341
2425-120	기준경비	14,480	16,960	△2,480
2425-140	경상직경비	122,920	111,099	11,821
3000	경제개발	13,360,114	7,940,717	5,419,397
3200	지역경제개발	1,249,432	634,108	615,324
3210	지역경제개발	1,249,432	634,108	615,324
3211	지역경제관리	1,249,432	634,108	615,324
3211-100	경상예산	45,432	24,108	21,324
3211-120	기준경비	31,360	5,760	25,600
3211-140	경상직경비	14,072	18,348	△4,276
3211-200	사업예산	1,204,000	610,000	594,000
3211-250	자체(신규)사업	1,204,000	608,000	596,000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	11,756,074	7,017,971	4,738,103
3320	처수및재해대책	897,640	1,079,091	△181,451
3321	하천관리	897,640	1,079,091	△181,451
3321-100	경상예산	482,875	437,091	45,784
3321-140	경상직경비	482,875	431,427	51,448
3321-200	사업예산	414,765	642,000	△227,235
3321-250	자체(신규)사업	414,765	642,000	△227,235
3330	긴설관리	10,858,434	5,938,880	4,919,554
3331	긴설행정	346,892	309,537	37,355
3331-100	경상예산	340,750	303,446	37,304
3331-120	기준경비	48,000	35,220	12,780
3331-130	관서운영비	126,298	115,766	10,532
3331-140	경상직경비	166,452	152,460	13,992
3331-200	사업예산	6,142	6,091	51
3331-250	자체(신규)사업	6,142	6,091	51
3332	도로건설	10,511,542	5,629,343	4,882,199
3332-100	경상예산	1,061,607	999,228	62,379
3332-110	인건비	287,232	244,149	43,083
3332-120	기준경비	13,080	16,044	△2,964
3332-140	경상직경비	761,295	739,035	22,260
3332-200	사업예산	9,449,935	4,612,669	4,837,266
3332-250	자체(신규)사업	9,449,935	4,612,669	4,837,266
3400	교통관리	354,608	288,638	65,970
3410	교통행정관리	354,608	288,638	65,970
3411	교통기획행정	38,585	218,558	△179,973
3411-100	경상예산	38,585	95,728	△57,143
3411-120	기준경비	7,920	17,680	△9,760
3411-140	경상직경비	30,665	78,048	△47,383
3412	교통및운수지도	316,023	70,080	245,943
3412-100	경상예산	316,023	70,080	245,943

'96 일반회계 세출예산

[본예산] 기능별－본청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3412-120 기준경비	33,060		33,060
3412-140 경상적경비	282,963	70,080	212,883
4000 만방위비	192,864	201,910	△9,046
4100 만방위 관리	192,864	201,910	△9,046
4110 민방위 관리	192,864	201,910	△9,046
4111 민방위 관리	104,334	118,370	△14,036
4111-100 경상예산	104,334	118,370	△14,036
4111-120 기준경비	10,140	16,440	△6,300
4111-140 경상적경비	94,194	101,930	△7,736
4113 병사관리	88,530	83,540	4,990
4113-200 사업예산	88,530		88,530
4113-210 국고보조(정상)	88,530		88,530
5000 지원및기타경비	880,000	1,287,770	△407,770
5400 예비비	880,000	1,287,770	△407,770
5410 예비비	880,000	1,287,770	△407,770
5411 예비비	880,000	1,287,770	△407,770
5411-400 예비비등	880,000	1,287,770	△407,770
5411-410 예비비	880,000	1,287,770	△407,770

□ 특별회계

-- 세 입

의료보호기금

'96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본예산]○세 입(장, 관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	구성비	증 △ 감
합	1,668,891	100.0	1,880,176	100.0	△211,285
세 입	사업수입	0	0		0
	사업외수입	21,895	1.3	26,573	1.4
	보조금	1,646,996	98.7	1,853,603	98.6
	지방채	0	0		0
		0	0		0
		0	0		0
		0	0		0

새마을소득지원사업
 '96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본예산]○세 입(장, 관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	구성비	증 △ 감
합	220,000	100.0	230,000	100.0	△10,000
세 입	사업수입	0	0		0
	사업외수입	220,000	100.0	230,000	100.0
	보조금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주 차 장

'96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본예산]○세 입(장, 관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	구성비	증 △ 감
합	9,398,116	100.0	7,198,788	100.0	2,199,328
세 입	주차장관리수입	1,036,800	11.0	263,160	3.7
	기타교통사업수입	8,361,316	89.0	6,935,628	96.3
	보조금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세 출

의료보호기금

[본예산] ○ 세 출 (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	구성비	증 △ 감
합	1,668,891	100.0	1,880,176	100.0	△211,285
세	경상예산	5,126	0.3	3,600	0.2
	인건비	0		0	0
	기준경비	2,160	0.1	2,160	0.1
	관서운영비	0		0	0
	경상적경비	2,966	0.2	1,440	0.1
	사업예산	1,658,265	99.4	1,871,146	99.5
	국고보조(경상)	0		0	0
	국고보조(사업)	0		0	0
	지방양여금사업	0		0	0
	시·도비보조사업	1,658,265	99.4	1,871,146	99.5
출	자체(신규)사업	0		0	0
	자체(계속)사업	0		0	0
	채무상환	0		0	0
	지방채(국내)상환	0		0	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	0
	기타(국내)상환	0		0	0
	차관(해외)상환	0		0	0
	예비비 등	5,500	0.3	5,430	0.3
	예비비	0		0	0
	기타	5,500	0.3	5,430	0.3
					70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본예산] ○세 출 (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	구성비	증 △ 감
합	220,000	100.0	230,000	100.0	△10,000
세	경상예산	0	0		0
	인건비	0	0		0
	기준경비	0	0		0
	관서운영비	0	0		0
	경상직경비	0	0		0
	사업예산	220,000	100.0	230,000	100.0
	국고보조(경상)	0	0		0
	국고보조(사업)	0	0		0
	지방양여금사업	0	0		0
	시·도비보조사업	0	0		0
출	자체(신규)사업	220,000	100.0	230,000	100.0
	자체(계속)사업	0	0		0
	채무상환	0	0		0
	지방채(국내)상환	0	0		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		0
	기타(국내)상환	0	0		0
	차관(해외)상환	0	0		0
	예비비등	0	0		0
	예비비	0	0		0
	기타	0	0		0

주 차 장

[본예산] ○세 출 (세세항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	구성비	증 △ 감
합	9,398,116	100.0	7,198,788	100.0	2,199,328
세	경상예산	1,515,583	16.1	1,018,987	14.2
	인건비	433,946	4.6	65,122	0.9
	기준경비	178,907	1.9	11,520	0.2
	관서운영비	23,760	0.3	0	23,760
	경상적경비	878,970	9.4	942,345	13.1
	사업예산	7,820,126	83.2	5,426,422	75.4
	국고보조(경상)	0		0	0
	국고보조(사업)	0		0	0
	지방양여금사업	0		0	0
	시·도비보조사업	0		0	0
출	자체(신규)사업	7,820,126	83.2	5,426,422	75.4
	자체(계속)사업	0		0	0
	채무상환	0		0	0
	지방채(국내)상환	0		0	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	0
	기타(국내)상환	0		0	0
	차관(해외)상환	0		0	0
	예비비등	62,407	0.7	753,379	10.5
	예비비	62,407	0.7	747,169	10.5
	기타	0		6,210	0.1
6,210					

3.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원)

사업명	구 분	총 액	전년도이전			전년도			당해년도	년 도	년 도	비 고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액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액				
		0										

4. 채무부담행위조서

(단위: 원)

과 목	사업명	년도별	채무부담행위액	지출예산액		비 고
				년도	금액	
			0			

5. 명시이월조서

(단위: 원)

과 목	년도별	세 항	목	이 월 액	사 유
		장	관	항	
				0	

'96년도 예산(안)중 수정 예산(안)

제출연월일: 1995년 12월 20일

제출자: 마포구청장

(단위: 천원)

(일반회계)

과 목			당 초 제출예산액	수정(안)		수정예산액	수 정 이 유 외 내 역		
장	관	항		감 액	증 액				
합 계			95,632,225	1,346,211	1,346,211	95,632,225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의회 운영	1,364,911	4,400	77,214	1,437,725	<p>[의사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2,400,000원 감액 - 특수활동비 3,000,000원 증액 - 행사 및 사무국업무활동 2,400,000원 증액 • 일반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보수비 2,000,000원 감액 - 회의록 속기 1,314,000원 증액 - 여비 2,500,000원 증액 - 자산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2,000,000원 증액 • 의정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비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00,000원 증액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21,479,382	12,500		21,466,882	[예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단 설립기금 12,500,000원 감액 	<p>[공보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탐방 교실운영 1,500,000원 감액 - 서·화 사진전 9,000,000원 감액 - 구민사진촬영대회, 노래자랑, 전통민속놀이 20,000,000원 감액 - 홍보업무 추진비 7,200,000원 감액 • 일반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간신문구독 5,000,000원 감액 - CATV 설치 216,000원 감액 - CATV 시청료 1,677,000원 감액 - 통장일간신문구독 17,280,000원 증액 		
	공보관리	498,352	44,593	17,280	471,039				

'96년도 예산(안)중 수정 예산(안)

(일반회계)

(단위:천원)

과 목			당 초 제출예산액	수정(안)		수정예산액	수 정 이 유 와 내 역
장	관	항		감 액	증 액		
		내무행정	24,556,884	198,462	121,800	23,480,222	<p>[서무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활동비 10,000,000원 감액 — 민원상담실 업무추진비 1,200,000원 감액 • 복리후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범원 교통비 63,600,000원 증액 • 시설비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사(보건소증축) 100,000,000원 감액 — 설계용역비 15,100,000원 감액 <p>[사회진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새도이주기 사업추진비 200,000원 감액 — 씨름왕 선발대회 1,000,000원 감액 — 구청장기(기타4종목) 2,000,000원 감액 — 구연합 회장기대회 2,000,000원 감액 •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화 연구팀 국외연수 5,000,000원 감액 • 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 지도자 자체교육 840,000원 감액 — 바로계살기위원회 교육 2,048,000원 감액 — 시민교양교육 강사수당 600,000원 감액 • 민간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성회복을위한친절, 예절교실운영 2,920,000원 감액 — 기초질서지키기운동사업추진비 2,412,000원 감액 — 환경오염 감시단 운영비 790,000원 감액 — 국민화합운동 추진비(농촌일손돕기) 1,000,000원 감액 — 새마을 방역대 유류보조 및 장비 유지비 15,000,000원 감액 — 방범봉사대 운영 3,360,000원 감액 — 독서감사문대회 920,000원 감액 — 거리질서제도 1,072,000원 감액 — 임의보조 30,000,000원 감액

'96년도 예산(안)중 수정 예산(안)

(일반회계)

(단위:천원)

과 목			당 초 제출예산액	수정(안)		수정예산액	수 정 이 유 와 내 역
장	관	항		감 액	증 액		
							[일선행정조직] • 특수활동비 - 동활성화 사업추진비 16,000,000원 감액 • 복리후생비 - 식당운영비 보조 43,200,000원 증액
	재무행정	재무행정	691,043	3,000	6,213	694,256	[세정관리] • 자산취득비 - FAX3대구매(관리1, 부과2) 4,413,000원 증액 - OCR 검색기 1,800,000원 증액 [회계관리] • 일반운영비 - 구유 잡종재산 유지관리 3,000,000원 감액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보건	2,547,848	4,000	39,750	2,583,598	[위생관리] • 보상금 - 식품접객모범업소 격려 4,000,000원 감액 [의약관리] • 일반운영비 - 치료용 약품등 39,750,000원 증액
		환경관리	16,366,815	1,022,171		15,344,644	[청소관리] • 자치단체이전 -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 1,022,170,800원 감액
사회보장	일반사회 복지	일반사회 복지	426,663	39,480		387,183	[사회복지] • 보상금 - 설날, 중추절, 년말이웃돕기 39,480,000원 감액
		생활보호	2,456,312		203,360	2,659,672	[조소득주민보호] • 민간이전 - 점자독서실 운영지원 3,000,000원 증액 • 시설비등 - 노임취로사업비 200,000,000원 증액 - 노임취로사업부대비 360,000원 증액

'96년도 예산(안)중 수정 예산(안)

(일반회계)

(단위:천원)

과 목			당 초 제출예산액	수정(안)		수정예산액	수 정 이 유 와 내 역
장	관	항		감 액	증 액		
	가정복지		6,593,207	3,000	9,000	6,599,207	[가정복지] • 보상금 - 결식노인급식비 3,000,000원 증액 - 사랑의 전화지원 2,000,000원 감액 [유아복지] • 업무추진비 - 어린이 재롱잔치 6,000,000원 증액 • 일반운영비 - 가정복지시설 환경개선 부담금 1,000,000원 감액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도시개발	2,569,905		21,080	2,590,985	[도시정비] • 업무추진비 - 마포로 신시가지 조성 업무추진비 1,641,000원 증액 • 일반운영비 - 마포로 신시가지 조성 1,439,000원 증액 • 보상금 - 마포로 신시가지 조성 시상금 18,000,000원 증액
경제개발	지역경제 개발	지역경제 개발	1,249,432	1,000		1,248,432	[지역경제관리] • 보상금 - 쥐약구입 1,000,000원 감액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10,858,434	4,000		10,854,434	[도로건설] • 시설비등 - 사고주 보수 4,000,000원 감액
	교통 관리	교통행정 관리	354,608	9,605		345,003	[교통기획행정] • 일반운영비 - 교통전문직 운영 3,160,000원 감액 - 주요지점 정기교통량조사 6,445,000원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880,000		850,514	1,730,514	[예비비] • 예비비 850,514,000원 증액

'96년도 예산(안)중 수정 예산(안)

(단위:천원)

(특별회계)

과 목			당 초 제출예산액	수정(안)		수정예산액	수 정 이 유 와 내 역		
장	관	항		감 액	증 액				
	합 계		9,398,116	82,230	82,230	9,398,116			
주 차 장 특별회계	교통관리	교통관리	1,693,572	82,230	82,230	1,693,572	[지역교통관리]		
							• 인건비		
							— 공익근무요원 봉급	7,673,000원	감액
							• 보상금		
							—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41,400,000원	감액
							—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9,660,000원	감액
							—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23,497,000원	감액
							• 예비비		
							— 예비비	82,230,000원	증액

19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1996년 12월 21일

제안자 : 한수균 의원회 21인

1. 수정이유

매립지의 한계 및 매립비용의 과다로 차치구의 소각장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소각장 건설은 전액 시부담으로 하고 매립지 조성은 차치구 부담으로 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우리구의 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은 30%만 반영코자 하는 것임.

2. 수정내용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개발분야 환경관리항의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은 34억 723만 6천원에서 10억 2,217만 800원으로 하고 삭감한 금액 23억 8,500만 5,200원을 예비비로 편성코자 함.

1996년도 예산(안) 중 수정 예산(안)						(단위: 원)
1. 일반회계(세출)		2. 1996년도 예산(안) 중 수정 예산(안)		3. 1996년도 예산(안) 중 수정 예산(안)		
과	목	기방자치단체	제출예산액	수정(안)	수정예산액	수정 이 유 와 내 역
장	관	기방자치단체	제출예산액	수정(안)	수정예산액	매립지의 한계 및 매립비용의 과다로 차치구의 소각장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소각장 건설은 전액 시부담으로 한다는 차치구 조성은 차치구 부담으로 한다는 서울시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구의 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은 30%만 반영코자 하고 삭감한 금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코자 함.